

경동대학교 학칙

제정 1997. 03. 01	제정 1997. 05. 29
개정 1998. 03. 01	개정 2001. 08. 06
개정 2003. 03. 01	개정 2004. 03. 01
개정 2005. 03. 01	개정 2006. 03. 01
개정 2006. 08. 01	개정 2006. 09. 11
개정 2006. 12. 06	개정 2008. 03. 01
개정 2009. 03. 01	개정 2009. 06. 03
개정 2009. 10. 20	개정 2010. 02. 18
개정 2010. 09. 13	개정 2010. 12. 07
개정 2011. 01. 18	개정 2011. 03. 01
개정 2011. 09. 29	개정 2011. 12. 11
개정 2011. 12. 16	개정 2012. 05. 01
개정 2013. 01. 25	개정 2013. 07. 16
개정 2013. 10. 28	개정 2014. 03. 31
개정 2014. 06. 16	개정 2014. 07. 23
개정 2014. 09. 04	개정 2014. 09. 29
개정 2014. 10. 24	개정 2015. 04. 07
개정 2015. 08. 31	개정 2016. 01. 08
개정 2016. 02. 04	개정 2016. 02. 29
개정 2016. 04. 29	개정 2016. 08. 26
개정 2016. 12. 29	개정 2017. 02. 09
개정 2017. 05. 01	개정 2017. 06. 26
개정 2017. 08. 28	개정 2017. 12. 26
개정 2018. 02. 07	개정 2018. 02. 28
개정 2018. 04. 30	개정 2018. 06. 25
개정 2018. 12. 10	개정 2019. 02. 11
개정 2019. 06. 2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경동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목적) 홍익인간의 교육이념과 본 대학교의 설립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충효인경의 민족적 품성과 자강불식의 실천적 태도를 바탕으로 새 문화 창조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한 봉사에 앞장섬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이를 경동정신으로 삼는다.

제3조 (위치) (삭제 1997. 5. 29)

제4조 (교육편제 및 학생정원) ① 본 대학교에 온사람교양교육대학, 간호대학, 의료생명보건대학, 평생교육대학, 관광산업학부, 유아교육학부와 학과를 두고, 학생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 9. 29,

개정 2013. 3. 1, 개정 2013. 7. 16, 개정 2013 10. 28, 개정 2016. 1. 8, 개정 2016. 2. 4, 개정 2016. 8. 26, 개정 2017. 5. 1, 개정 2017. 6. 26, 개정 2017. 12. 26, 개정 2018. 2. 7, 개정 2018. 6. 25, 개정 2019. 6. 24.)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와 2개 이상의 대학 또는 학과(부)가 연계·융합하여 개설된 전공을 둘 수 있으며, 교과과정 등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10. 20, 개정 2017. 8. 28)

③ 제1항의 학부·과의 신설, 통합, 폐지, 정원조정 등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10. 20, 개정 2010. 9. 13, 개정 2014. 9. 4)

제4조의2 (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며 사회봉사에 힘쓴다.

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본조신설 2019. 6. 24.]

제4조의3 (교원) ① 교원은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비전임교원(겸임교수, 명예교수, 석좌교수, 강사, 초빙교수, 특임교수 등)으로 구분하고, 교육과 연구, 지도, 학문연구의 효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객원교수 등 다른 교원을 둘 수 있으며, 교원의 임용·재임용 절차, 근무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학기당 12학점에 해당하는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 등의 교수시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며, 세부사항은 책임시수 및 시간교육비지급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6. 24.]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5조 (수업연한)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제6조 (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휴학기한을 포함하여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8. 4. 30)

② 재학연한 이내에 본 대학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제적한다. (개정 2009. 10. 20, 개정 2013. 3. 1)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 (학년) 학년은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 일까지로 한다.

제8조 (학기) ① 학년은 다음과 같이 2개학기로 나눈다. 다만, 학기 개시일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1. 제 1학기 : 3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 2학기 : 9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 ② 하기 및 동기 휴가 기간 중에 계절학기를 들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0)
- ③ 모든 교과는 반드시 매학기 15주 이상 수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휴업일 등의 사유로 수업결손이 발생한 경우 보강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 4. 7)

제10조 (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기휴가 : 6월부터 8월 사이
2. 동기휴가 : 12월부터 2월 사이
3. 개교기념일
4. 일요일
5. 법정공휴일

② 휴가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일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보강 및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4장 입학 (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11조 (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외국인 전형 학생, 재입학, 편입학 시기는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법정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 10. 20, 개정 2013. 3. 1, 개정 2014. 6. 16)

제12조 (입학자격)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1)

제13조 (입학절차) ① 입학할 희망하는 사람은 소정 원서에 다음 중의 지정 서류와 수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입학 지원 절차는 모집 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1)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증명서
2. 최종학교의 성적증명서
3.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개정 2013. 3. 1)
4. 출신학교장의 추천서
5. 기타 필요한 서류(모집 시 공고) (개정 2013. 3. 1)

②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소정 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출신 고등학교의 학교 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 적성검사 등) 총장이 정하는 선발 방법에 의해 선발하되, 면접고사 성적은 합격·불합격의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5. 4. 7)

② 단,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신설 2015. 4. 7)

③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 4. 7)

제15조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1)

②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1)

제16조 (입학허가 및 취소) 입학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2009. 3. 1, 개정 2013. 3. 1)

제17조 (2중 학적의 금지) 본 대학 학생으로 2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

제18조 (편입학) ① 법령에 의한 편입학 자격을 갖춘 학생은 학생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본 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5. 4. 7)

②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3학년에 정원 외로 편입학 할 수 있되, 당해 학년도 교육부의 대학편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5. 4. 7)

③ 편입학 학생은 학점인정 등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 (전과(부)) ① 교내 전부 및 전과(이하“전과”라 한다)는 제2, 3학년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5. 8. 31)

② 전과는 대학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해당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총장이 허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사범계학과와 보건계학과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4. 7. 23)

③ 전과한 학생은 소정 과목의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④ 전과 규정의 세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 3. 1)

제20조 (전공 배정) 학부별로 모집한 학생의 전공 배정은 2학년 또는 3학년 진급 때에 실시하되, 입학한 학부 내에서 배정하도록 한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1)

제21조 (재입학) ① 제24조 내지 제25조에 의거하여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의 재입학은 해당 학과 (부) 및 전공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과정을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7. 6.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제16조를 적용한다.

③ 위 ①항 외의 본 대학교 수료 학생으로서 다시 입학하는 재입학 학생은 본 대학교의 입학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5. 4. 7)

제22조 (시간제등록) ①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10% 범위 안에서 시간제 등록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시간제 등록생의 수강학점은 10학점까지 허용한다.

③ 편입학 요건이 되는 경우 편입학을 할 수 있으며, 학점은행제는 정부규정에 따라 140학점 취득 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제5장 휴학, 퇴학 및 제적

제23조 (휴학 및 복학) ①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1년 이내를 1회 단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과이수에 지장이 없는 학생에 한하여 한 학기를 휴학기간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재학 중 4개학기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병역의무와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불구하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4. 3. 31, 개정 2017. 5. 1)

③ 1개학기 이상의 가료가 필요한 질병휴학과 총장이 승인한 유학·연수·훈련 등의 경우 전항에 불구하고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휴학기간과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17. 5. 1)

④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⑤ 휴학한 학생은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하여야 하며, 군 제대 복학의 경우 제대 후 1년 이내에 한하되, 군 제대 일자가 복학대상 학기의 개시일 이후일 경우 수업일수 1/4 이내로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제24조 (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1)

제25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30일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개정 2013. 3. 1, 개정 2017. 2. 9)
2. (삭제 2017. 2. 9)
3. 재학 중 통산 4회 이상 또는 연속 3회 학사 경고를 받은 학생. (개정 2013. 3. 1, 개정 2017. 8. 28)
4. 감염병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의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사망한 학생. (개정 2013. 3. 1, 개정 2017. 2. 9)

5. 타교에 신입 또는 편입학한 학생. (개정 2013. 3. 1)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개정 2013. 3. 1)
7.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 (개정 2013. 3. 1)
8. 외국인 유학생 중 소재불명으로 법무부에 신고 된 학생. (개정 2009. 6. 3, 개정 2013. 3. 1)
9. 별도로 정하는 징계 규정의 퇴학·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학칙 위반학생 (개정 2013. 3. 1)

제6장 교과 및 수업

제26조 (교과과정 및 수업) ① 교과목의 구성은 교양 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필수 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과목의 구성과 교과과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매학기의 개설교과목 및 수업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 (교과 이수단위)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체육·사회 봉사활동 및 총장이 정하는 과목은 1학기 간 30시간 이상의 수업활동을 1학점으로 한다.

② 학생의 학업 성취 능력에 따라 매 학기당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다음과 같다.

기본신청 : 최하 15학점 ~ 최고 19학점(중등특수교육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최고 20학점)

초과신청 : 최하 15학점 ~ 최고 22학점(중등특수교육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최고 23학점)

(단, 7차 학기는 6학점, 8차 학기는 3학점이상으로 한다.) (개정2009. 3. 1, 개정 2010. 2. 18, 개정 2013. 3. 1)

③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 학점 취득 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인정과 총장이 승인하는 대체 과정에서 취득하는 학점의 인정범위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8. 2. 7)

제28조 (학점교류 및 인정) ①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복수학위과정 협약 대학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 및 사이버대학 강좌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이를 본 대학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외국학생이 본 대학에서 수업을 받고 학점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 (부전공 및 복수 전공) ① 부전공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위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부전공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1)

② 복수전공은 2학년(3학기)부터 허용하며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교과 3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복수학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전공(소속학부 전공 또는 학과)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제2전공을 인정한다.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1)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30조 (평가시험) ① 시험은 학기말에 실시하는 정기 시험과 각 학부별 교수회의 또는 교과담당교수가 시기 및 방법을 정하는 중간시험 및 총장이 필요에 의하여 실시하는 추가 또는 특별시험으로 구분한다. 그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은 당해 과목의 학점 이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7. 8. 28)

③ 전공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따로 과할 수 있다.

제31조 (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 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P(합격) 또는 N(불합격)로 표시하고, D이상과 P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개정 2015. 8. 31, 개정 2018. 2. 7.)

등 급	평 점	100점 환산 또는 득점
A+	4.5	100 - 95
A	4.0	94 - 90
B+	3.5	89 - 85
B	3.0	84 - 80
C+	2.5	79 - 75
C	2.0	74 - 70
D+	1.5	69 - 65
D	1.0	64 - 60
F / N	0	59점 이하 또는 불합격
P		60점 이상 또는 합격

③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성적 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 성적평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성적배점, 성적분포,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외국인학생의 학점, 대학지정 운동부의 학점, 학점 대체 인정 등 기타 학점부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4. 7)

제32조 (수강 과목의 철회 및 재수강) ① 선택 과목에 한해서 수업일수 1/4 이내에 수강 신청한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 하고자 할 때는 재수강 신청을 하여야 하며, C+ 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허용한다. 단, 사회봉사활동은 B+이하까지 허용한다.(개정 2014. 3. 31, 개정 2015. 4. 7)

제33조 (경고) 학사경고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방법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

① 매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1.75에 미달하는 학생. (개정 2013. 3. 1, 개정 2017. 8. 28)

② (개정 2013. 3. 1, 삭제 2017. 8. 28)

제34조 (졸업 및 학위수여) ①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사학위를 수여하며 졸업 및 학위수여는 학년말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 졸업 및 8학기 이후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학기말에도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개정 2014. 3. 31)

②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졸업 최소 이수 학점인 1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중등특수교육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는 140학점 이상을 취득(계약학과 제외)) (개정 2010. 2. 18, 개정 2013. 3. 1, 개정 2014. 3. 31)

2. (삭제 2017. 2. 9)

3. 별도로 정하는 교과 영역별 최소 이수 학점은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9)

4. 별도로 정하는 학과별 졸업요건 및 졸업인증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7. 2. 9, 개정 2017. 8. 28)

③ 전항에 의한 학사학위는 <별표 1>에 명시한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3. 3. 1)

④ 전체 학년 평균 평점이 4.00이상으로서 4학년 소정의 전 과정을 6학기 또는 7학기 간에 이수하고 세척에서 정하는 조기졸업요건을 갖춘 학생은 수업연한을 1내지 2학기를 단축하여 조기 졸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⑤ 국내 · 외 대학과의 협약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복수학위과정 이수 학생 학위수여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 6. 25)

제34조의 2 (학위 수여의 취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 4. 7)

제35조 (수료)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학생에게는 따로 정하는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하되 재시험의 기회를 준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1)

1. 1학년 수료: 34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68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102학점 이상

4. 4학년 수료: 졸업 최소 이수 학점 (개정 2010. 2. 18, 개정 2013. 3. 1)

제36조 (유급) 학력을 보완하기 위해 유급을 희망하는 학생은 유급을 할 수 있으며, 유급한 학생은 이를 취소할 수 없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삭제 1997. 5. 29, 개정 2015. 4. 7)

제8장 학생활동

제37조 (학생활동) ① 학생은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협동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학생단체(자치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1)

② 학생단체(자치기구)는 캠퍼스별로 구성한다. (신설 2013. 3. 1)

③ (삭제 2018. 12. 10)

제38조 (자치활동비) 학생의 건전한 자치활동에 관한 회비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납입금(등록금)과 통합하여 고지 및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3. 3. 1)

제39조 (학생단체의 조직)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학생활동의 제한) ①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수업거부, 불온게시물의 무단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 (개정 2013. 3. 1)

②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학사에 영향을 줄 행사 또는 활동을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3. 1)

제41조 (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 학년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복지위원회를 두며, 학생복지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1)

제42조 (학생활동의 사전승인) (삭제 2013. 3. 1)

제43조 (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입학 및 활동 제한)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받은 사람 (타교에서의 징계 포함)은 신입학과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으며 사후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고, 편입학 및 재입학 학생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기구 대표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제9장 포상과 징계

제45조 (규율) (삭제 1997. 5. 29)

제46조 (결석) (삭제 1997. 5. 29)

제47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제48조 (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수회의 또는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1. 이 학칙을 위반한 학생 (개정 2013. 3. 1)
2. 무단 결석이 4주간을 초과한 학생 (개정 2013. 3. 1)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학생으로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개정 2013. 3. 1)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학생 (개정 2013. 3. 1)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③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조의 2(성희롱·성폭력예방) ① 본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방지 하고 그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

② 제1항의 성희롱 및 성폭력의 방지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 3. 1, 개정 2013. 3. 1)

제10장 납입금 및 학생복지

제49조 (납입금 납부 의무)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 시기에 등록금과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과 기타 소정의 납입금은 결석, 정학, 제적 또는 퇴학 등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③ 납부한 수업료 등 납입금의 반환은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 3. 1)

제49조의2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 대학 학생의 등록금 책정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 위원은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를 대표하는 8인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11)

② 각 구성단위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교수회 및 직원회의 회의운영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2. 28)

1. 교직원 대표(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는 4인으로 하고, 이 중 교원대표는 조교수 이상이 참여하는 전체교수회에서, 직원대표는 전체 직원회의에서 각각 선출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8. 2. 28)

2. 학생대표는 3명으로 하고,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8. 2. 28, 2018. 12. 10)

3. 관련전문가 대표는 1명으로 하고, 교육관련 전문가 또는 회계 전문가를 총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8. 2. 28)

③ 위원회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대표의 임기는 학생대표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학생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3. 1)

제49조의3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등록금 산정에 관한 기초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2. 대학 등록금 산정의 적정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학 등록금 산정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49조의4(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위원 임기와 같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이를 대리한다.

제49조의5(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총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적어도 7일 전에 회의 목적, 시간,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이때, 회의 개최는 교내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의6(행정사항) ① 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직원 중에서 간사1인을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등록금 책정에 관련된 자료를 대학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요청을 받은 대학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존·공개 등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6항에 의거한다.

(개정 2011. 12. 11)

제50조(납입금의 면제) 장학 규정에 따라 해당학생은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제50조의2(장애·소수집단학생 지원)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탈북학생 등이 학내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9)

제51조(장학금)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교수회 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1. 학업에 성실하며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개정 2013. 3. 1)
2. 학교발전과 사회봉사에 모범이 되거나 생활이 극빈한 학생 (개정 2013. 3. 1)

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③ 장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0장의2 대학평의위원회

제51조의2(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본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

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09. 3. 1)

제51조의3(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하는 11명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9. 3. 1)

1. 교원 5명
2. 직원 5명
3. 학생 1명

제51조의4(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한다. (신설 2009. 3. 1)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1조의5(운영규정) 평의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 3. 1)

제11장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

제52조 (교수회)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의 사람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5. 1, 2016. 4. 29)

제53조 (교수회의 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교무처장 부재 시는 기획조정처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4. 3. 31, 개정 2016. 4. 29, 개정 2017. 12. 26)

② 교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대학평의원 후보 추천
3.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교수회는 재직교원의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 (교무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각 처·실장, 학과(부)장, 산학협력단장, 부속기관장과 부서장 중에서 선정하고 이외 총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7. 2. 9, 개정 2017. 5. 1)

③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총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의장을 호선한다. (신설 2017. 5. 1)

④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 5. 1)

⑤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사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2. 교육과정 및 학생지도, 상벌에 관한 중요사항
3.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학생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학칙 및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교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4조의2 (제위원회) 대학운동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52조 내지 제54조 이외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 3. 1) (개정 2016. 4. 29)

제54조의3 (학칙 개정) ① 학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학보, 본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1, 개정 2009. 6. 3)

② 학칙 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9. 3. 1, 개정 2009. 6. 3, 개정 2011. 12. 16)

③ 사전 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단, 학칙에 부속된 세부 규정은 교무위원회에서 위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9. 3. 1, 개정 2009. 6. 3, 개정 2013. 3. 1)

④ 전조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 학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신설 2009. 3. 1, 개정 2009. 6. 3, 개정 2014. 3. 31)

제54조의4 (대학자체평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본 대학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학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제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 6. 3)

제12장 행정부서

제55조 (행정부서) 법인정관으로 정하는 행정부처와 산하부서의 운영과 설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 2. 18, 개정 2013. 3. 1, 개정 2013 10.28, 개정 2014. 7. 23, 개정 2014. 09. 29, 개정 2014. 10. 24, 개정 2015. 4. 7, 개정 2016. 1. 8)

1. (삭제 2013. 3. 1)

2. (삭제 2013. 3. 1)

3. (삭제 2013. 3. 1)

제56조(직제) (삭제 1997. 5. 29)

제13장 부속기관

제57조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본 대학교에서는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를 두며, 운영과 설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6. 1. 8)

1. (삭제 2013. 3. 1)

2. (개정 2009. 3. 1, 개정 2010. 2. 18, 개정 2010.12. 7, 삭제 2013. 3. 1)

② (삭제 2013. 3. 1)

제14장 산학협력단 등

제58조 (산학협력단의 설치 및 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산·학·연·관 협력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산학협력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의2(학교기업의 설치) ① 본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명칭과 사업종목 및 연계학과는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17. 6. 26)

② 본 대학교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메디컬캠퍼스(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훤로 815)로 한다. (신설 2017. 6. 26)

③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 3. 1)

제58조의3(학생군사교육단) ① 본대학교에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거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은 학군사관후보생(남·여)의 군사교육 여건보장과 내실 있는 장교후보생 양성을 위해 대학 총장 직속기관으로 둔다. (신설 2013. 3. 1)

②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의 군사교육,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한 지원사항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 3. 1)

제15장 보칙

제59조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3. 1)

제60조 (한중대학교 특별편입생에 대한 특례) 2018.2.28.자로 폐교되는 한중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 편입학 협조 요청에 따라 특별 편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전적(前籍) 대학의 학사관련 규정 및 상이한 학사제도를 감안하여 수업방법, 수업장소, 성적부여, 학점인정, 학위수여 등 학사운영에 관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12327 (2017.10.27.) “한중대학교 폐쇄 명령 처분 알림”,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16302 (2017.11.29.) “한중대학교(대학원 포함) 특별편입학 전형일정 알림”] (신설 2017. 12. 26)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학칙 승인일로부터 시행하되, 19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2. (경과규정) 제4조 (설치학부 및 정원) 및 제34조 (졸업 및 학위수여)의 학부 및 전공명칭 적용은 19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해당 학생 및 학부교수회의에서 동의 및 의결된 경우에 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제4조 (설치학부 및 정원) 및 제34조 (졸업 및 학위수여)의 학부 및 전공명칭 적용은 2002학년도 입학생 및 재학생부터 적용하되, 해당 학생 및 학부교수회의에서 동의 및 의결된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제58조는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제4조 (설치학부 및 정원) 및 제34조 (졸업 및 학위수여)의 학부 및 전공명칭 적용은 2006학년도 입학생 및 재학생부터 적용하되, 해당 학생 및 학부교수회의에서 동의 및 의결된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제4조 <별표1>는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동우대학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경동대학교와 동우대학의 통합 후 동우대학의 존속기간인 2015년(2016년 : 3년제인 경우) 2월 28일까지 전문대학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통합 시행 전에 동우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수수료 및 졸업 요건 등에 관하여는 동우대학의 입학년도 학칙 등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존속기간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② 동우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유예기간 내에 복학 및 재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유예기간 내에 복학 및 재입학을 하지 못하여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못할 학생 포함) 또는 동우대학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유예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못할 학생 포함)의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른 전문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폐지되는 동우대학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급과 취업 지원 등에 있어 경동대학교 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혜택을 부여하며, 기존 재학 캠퍼스 외의 캠퍼스에서 학업을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 재학 대상 캠퍼스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및 기숙사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3. (동우대학과 경동대학교의 통합 부속기관 등에 대한 경과조치) 2012년 2월 28일 현재 동우대학과 경동대학교 부속기관 중 중복·유사기관과 통폐합되는 부속기관은 경동대학교의 통합 부속기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설악캠퍼스에 본원을 두고 각 캠퍼스에 분원을 둘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 ①항의 학생정원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동우대학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2013.3.1)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우대학 재적학생 중 유예기간(경동대학교와 동우대학 통합 후 유예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재학생 및 휴학생의 경우에는 졸업할 때까지 교과과정을 유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 1항의 교육편제 중 간호대학 및 의료생명보건대학의 개편 및 계약학과 입학정원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2월 7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 1항의 계약학과 입학정원 및 융합 전공과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 1항의 교육편제 및 계약학과 정원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 1항의 학생정원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폐지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2019학년도에 폐지되는 한국어교원학과 재적생의 교육과정 이

수, 수료 및 졸업 요건 등에 관하여는 입학년도의 학칙 등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학과를 존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 1항의 교육편제 및 계약학과 정원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 1항의 학생정원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폐지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2020학년도에 폐지되는 중등특수교육과 재적생의 교육과정 이수, 수료 및 졸업 요건 등에 관하여는 입학년도의 학칙 등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학과를 존치한다.

[별표1] 설치학부 및 정원

○ 2012학년도 설치학부 및 정원

캠퍼스명	계열	학부/전공 · 학과		입학정원 (단위:명)	학위종별
계				852	
고성	인문·사회 계열	관광학부	관광경영학전공	107	경영학사
			호텔경영학전공		
			외식사업경영학전공		
		사회복지경영학부	사회복지학전공	70	문학사
			경영학전공		경영학사
		경찰행정학과		60	경찰학사
		스포츠마케팅학과		30	스포츠경영학사
		한국어교원과		30	문학사
		유아교육과		40	교육학사
		중등특수교육과		20	교육학사
	자연과학 계열	의료보건학부	작업치료학과	60	보건학사
			물리치료학과	60	보건학사
			응급구조학과	30	응급구조학사
			임상병리학과	20	임상병리학사
			안경광학과	30	보건학사
			간호학과	115	간호학사
		해양심층수학과		30	이학사
	공학계열	IT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60	공학사
			레저IT학전공		
		건축토목공학부	건축공학전공	60	공학사
			토목공학전공		
	예체능계열	디자인학과		30	디자인학사

○ 2013학년도 설치학부 및 정원

캠퍼스명	계열	학부/전공 · 학과		입학정원 (단위:명)	학위종별
계				1,848	
고성	인문·사회 계열	관광학부	관광사업학전공	130	경영학사
			호텔사업학전공		
			의식사업학전공		문학사
			관광영어학전공		
		보건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80	문학사
			실버산업학전공		
		경찰학과		75	경찰학사
		경영학과		40	경영학사
		의료보건학부	보건관리학과	40	경영학사
		스포츠마케팅학과		55	스포츠경영학사
	한국어교원과		30	문학사	
	중등특수교육과		20	교육학사	
	자연과학 계열	의료보건학부	작업치료학과	60	보건학사
			물리치료학과	60	보건학사
			응급구조학과	30	응급구조학사
			임상병리학과	20	임상병리학사
			안경광학과	30	보건학사
			치기공학과	80	치기공학사
		의료뷰티학과	30	보건학사	
	해양심층수학과		30	이학사	
	공학계열	IT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63	공학사
레저IT학전공			공학사		
토목공학과		33	공학사		
도시공간디자인학과		33	공학사		
건축공학과		30	공학사		
예체능계열	디자인학과		33	디자인학사	
				1,002	
속초	인문·사회 계열	행정학과		50	행정학사
		항공서비스학과		50	경영학사
		유아교육과		136	교육학사
	자연과학 계열	호텔조리학부	조리학전공	60	이학사
			제과바리스타학전공		
	정보보안학과		35	이학사	
예체능계열	체육학과		40	체육학사	
				371	
원주문막	자연과학 계열	의료보건학부	간호학과	315	간호학사
			치위생학과	160	치위생학사
				475	

○ 2014학년도 설치학부 및 정원

캠퍼스명	계열	학부/전공 · 학과		입학정원 (단위:명)	학위종별
계				1,823	
경기도 양주 Metropol 캠퍼스	인문·사회계열	스포츠마케팅학과		65	스포츠경영학사
		유아교육과		136	교육학사
	공학계열	토목공학과		33	공학사
		도시공간디자인학과		33	공학사
예체능계열	디자인학과		33	디자인학사	
				300	
원주문막 Medical 캠퍼스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315	간호학사
		치위생학과		160	치위생학사
				475	
설악 URIE 캠퍼스(고성)	인문·사회계열	관광학부	관광경영학전공	130	경영학사
			호텔경영학전공		
			외식사업경영학전공		
			관광항공경영학전공		
		보건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80	문학사
			실버산업학전공		
		경찰학과		75	경찰학사
		경영학과		40	경영학사
		보건관리학과		40	경영학사
		한국어교원학과		30	문학사
	중등특수교육과		20	교육학사	
	자연과학계열	작업치료학과		60	보건학사
		물리치료학과		70	보건학사
		안경광학과		30	보건학사
		응급구조학과		30	응급구조학사
		임상병리학과		60	임상병리학사
		치기공학과		80	치기공학사
		해양심층수학과		30	이학사
		건축공학과		35	공학사
	공학계열	IT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70	공학사
레저IT학전공			공학사		
예체능계열	체육학과		40	체육학사	
				920	
설악 URIE 캠퍼스(속초)	인문·사회계열	행정학과		30	행정학사
	자연과학계열	호텔조리학부	조리학전공	60	이학사
			제과바리스타학전공		
공학계열	정보보안학과		38	공학사	
				128	

○ 2014학년도 계약학과 정원

캠퍼스명	계열	학 과	입학정원 (단위:명)	학위종별
계			136	
원주문막 Medical 캠퍼스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47	간호학사
		치위생관리학과	19	치위생학사
설악 URIE 캠퍼스(고성)	자연과학계열	해양심층수융복합학과	20	이학사
	공학계열	컴퓨터응용학과	30	공학사
		IT융복합학과	20	공학사

○ 2015학년도 설치학부 및 정원< ① - 1 >

캠퍼스명	계열	학부	학 과	입학정원 (단위:명)	학위종별	
계				1,785		
Metropol Campus (경기도 양주)	인문·사회계열	경영마케팅학부	스포츠마케팅학과	65	스포츠경영학사	
		유아교육학부	유아교육과	136	교육학사	
	공학계열	건축토목공학부	토목공학과	33	공학사	
		디자인학부	건축디자인학과	33	공학사	
예체능계열			디자인학과	33	디자인학사	
				300		
Medical Campus (원주분막)	자연과학계열	간호학부	간호학과	315	간호학사	
		치위생학부	치위생학과	160	치위생학사	
				475		
Global Campus (고성)	인문·사회계열	경찰행정학부	행정학과	30	행정학사	
			경찰학과	75	경찰학사	
	예체능계열	-		체육학과	40	체육학사
		인문·사회계열	경영마케팅학부	경영학과	40	경영학사
	관광산업학부			관광경영학과	33	경영학사
			호텔경영학과	33	경영학사	
			외식사업경영학과	32	경영학사	
			관광항공경영학과	32	경영학사	
	-		(대명)레저&리조트학과	30	경영학사	
	의료보건학부	보건관리학과	40	경영학사		
		사회복지학과	40	사회복지학사		
		실버산업학과	32	사회복지학사		
	사범학부	중등특수교육과	20	교육학사		
		한국어교원학과	30	문학사		
	자연과학계열	의료보건학부	작업치료학과	60	보건학사	
			물리치료학과	70	보건학사	
			안경광학과	30	보건학사	
응급구조학과			30	응급구조학사		
임상병리학과			60	임상병리학사		
치기공학과			80	치기공학사		
-			해양심층수학과	30	이학사	
공학계열	건축토목공학부	건축공학과	35	공학사		
		IT공학부	컴퓨터공학과	40	공학사	
			정보보안학과	38	공학사	
				980		
Global Campus (속초)	자연과학계열	관광산업학부	호텔조리학과	30	이학사	

○ 2015학년도 계약학과 정원

캠퍼스	계열	학 과	학년	입학정원 (단위:명)	학위종별
계				171	
Medical Campus(원주분막)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4(편입)	58	간호학사
		치위생관리학과	4(편입)	26	치위생학사
Global Campus(고성)	자연과학계열	해양심층수융복합학과	3(편입)	20	이학사
		공학계열	컴퓨터응용학과	1(신입)	20
	IT융복합학과		3(편입)	10	
	인문·사회계열	안보경영학과	1(신입)	20	공학사
3(편입)			10	경영학사	
Metropol Campus(경기도 양주)	공학계열	건축융복합학과	1(신입)	6	공학사
			3(편입)	1	

○ 2015학년도 설치학부 및 정원 < ① - 2 >

계열	학부	학과	입학정원 (단위:명)	학위종별
계			1,785	
인문·사회계열	경찰행정학부	행정학과	30	행정학사
		경찰학과	75	경찰학사
	경영마케팅학부	경영학과	40	경영학사
		스포츠마케팅학과	65	스포츠경영학사
	관광산업학부	관광경영학과	33	경영학사
		호텔경영학과	33	경영학사
		외식사업경영학과	32	경영학사
		관광항공경영학과	32	경영학사
	-	(대명)레저&리조트학과	30	경영학사
	사범학부	중등특수교육과	20	교육학사
		한국어교원학과	30	문학사
	유아교육학부	유아교육과	136	교육학사
	의료보건학부	보건관리학과	40	경영학사
		사회복지학과	40	사회복지학사
실버산업학과		32	사회복지학사	
			668	
자연과학계열	의료보건학부	작업치료학과	60	보건학사
		물리치료학과	70	보건학사
		안경광학과	30	보건학사
		응급구조학과	30	응급구조학사
		임상병리학과	60	임상병리학사
		치기공학과	80	치기공학사
	간호학부	간호학과	315	간호학사
	치위생학부	치위생학과	160	치위생학사
	관광산업학부	호텔조리학과	30	이학사
	-	해양심층수학과	30	이학사
			865	
공학계열	건축토목공학부	건축공학과	35	공학사
		토목공학과	33	공학사
	IT공학부	컴퓨터공학과	40	공학사
		정보보안학과	38	공학사
	디자인학부	건축디자인학과	33	공학사
			179	
예체능계열	디자인학부	디자인학과	33	디자인학사
	-	체육학과	40	체육학사
			73	

○ 2016학년도 캠퍼스별 교육편제 및 입학정원 < ① - 1 >

캠퍼스명	대학, 학부	계열	학 과	입학정원 (단위:명)	학위종별
입학정원				1,785	
Metropol Campus (경기도 양주)	유아교육학부	인문·사회계열	유아교육과	136	교육학사
	-		스포츠마케팅학과	65	스포츠경영학사
	-	공학계열	토목공학과	33	공학사
	-		건축디자인학과	33	공학사
	-	예체능계열	디자인학과	33	디자인학사
	소계				300
Medical Campus (원주문막)	간호보건대학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315	간호학사
			치위생학과	160	치위생학사
			작업치료학과	60	보건학사
			물리치료학과	70	보건학사
			안경광학과	30	보건학사
			응급구조학과	30	응급구조학사
			임상병리학과	60	임상병리학사
			치기공학과	80	치기공학사
소계				805	
Global Campus (고성)	교양교육대학	인문·사회계열	-	-	
	관광산업학부		관광경영학과	33	경영학사
			호텔경영학과	33	경영학사
			외식사업경영학과	32	경영학사
		항공경영학과	32	경영학사	
	-	자연과학계열	호텔조리학과	30	이학사
	-		보건관리학과	40	경영학사
	-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학과	40	사회복지학사
	-		실버복지학과	32	사회복지학사
	-		행정학과	30	행정학사
	-		경찰학과	75	경찰학사
	-		경영학과	40	경영학사
	-		(대명)레저&리조트학과	30	경영학사
	-		중등특수교육과	20	교육학사
	-		한국어교원학과	30	문학사
	-	자연과학계열	해양심층수학과	30	이학사
	-	공학계열	건축공학과	35	공학사
	-		컴퓨터공학과	40	공학사
	-		정보보안학과	38	공학사
	-	예체능계열	체육학과	40	체육학사
소계				680	
평생교육대학	-	-	-	-	

○ 2016학년도 계약학과 정원

캠퍼스	대 학	계 열	학 과	학년	입학정원 (단위:명)	학위종별
입학정원					124	
Medical Campus(원주문막)	평생교육대학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4(편입)	37	간호학사
Global Campus(고성)	평생교육대학	자연과학계열	해양심층수 융복합학과	3(편입)	20	이학사
			공학계열	컴퓨터응용학과	1(신입)	20
		IT융복합학과		3(편입)	10	
		인문·사회계열	안보경영학과	1(신입)	20	경영학사
Metropol Campus(경기도 양주)	평생교육대학	공학계열	건축융복합학과	3(편입)	10	공학사
				1(신입)	6	
				3(편입)	1	

○ 2016학년도 교육편제 및 입학정원 < ① - 2 >

계열	대학, 학부	학과	입학정원 (단위:명)	학위종별
입학정원			1,785	
-	교양교육대학	-	-	
인문·사회계열	관광산업학부	관광경영학과	33	경영학사
		호텔경영학과	33	경영학사
		외식사업경영학과	32	경영학사
		항공경영학과	32	경영학사
	-	보건관리학과	40	경영학사
	-	사회복지학과	40	사회복지학사
	-	실버복지학과	32	사회복지학사
	-	행정학과	30	행정학사
	-	경찰학과	75	경찰학사
	-	경영학과	40	경영학사
	-	스포츠마케팅학과	65	스포츠경영학사
	-	(대명)레저&리조트학과	30	경영학사
	유아교육학부	유아교육과	136	교육학사
	-	중등특수교육과	20	교육학사
	-	한국어교원학과	30	문학사
소계			668	
자연과학계열	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315	간호학사
		치위생학과	160	치위생학사
		작업치료학과	60	보건학사
		물리치료학과	70	보건학사
		안경광학과	30	보건학사
		응급구조학과	30	응급구조학사
		임상병리학과	60	임상병리학사
		치기공학과	80	치기공학사
	관광산업학부	호텔조리학과	30	이학사
	-	해양심층수학과	30	이학사
소계			865	
공학계열	-	건축공학과	35	공학사
		토목공학과	33	공학사
	-	컴퓨터공학과	40	공학사
		정보보안학과	38	공학사
	-	건축디자인학과	33	공학사
소계			179	
예체능계열	-	디자인학과	33	디자인학사
	-	체육학과	40	체육학사
	소계			73
-	평생교육대학	-	-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입학정원	668	865	179	73

○ 2017학년도 캠퍼스별 교육편제 및 입학정원 < ① - 1 >

캠퍼스명	대학, 학부	계열	학 과	입학정원 (단위:명)	학위종별
입학정원				1,785	
메트로폴캠퍼스 (경기도 양주)	유아교육학부	인문·사회계열	유아교육과	136	교육학사
	-		스포츠마케팅학과	65	스포츠경영학사
	-	공학계열	토목공학과	33	공학사
	-		건축디자인학과	33	공학사
	-	예체능계열	디자인학과	33	디자인학사
소계				300	
메디컬캠퍼스 (원주문막)	간호보건대학	인문·사회계열	보건관리학과	40	보건학사
			사회복지학과	70	사회복지학사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315	간호학사
			치위생학과	160	치위생학사
			작업치료학과	60	보건학사
			물리치료학과	70	보건학사
			안경광학과	30	보건학사
			응급구조학과	30	응급구조학사
			임상병리학과	60	임상병리학사
치기공학과	80	치기공학사			
소계				915	
글로벌캠퍼스 (고성)	온사랑교양교육 대학		-	-	
	관광산업학부	인문·사회계열	관광경영학과	33	경영학사
			호텔경영학과	33	경영학사
		자연과학계열	외식산업경영학과	32	경영학사
			항공경영학과	32	경영학사
	-	인문·사회계열	호텔조리학과	30	이학사
	-		행정학과	30	행정학사
	-		경찰학과	75	경찰학사
	-		경영학과	40	경영학사
	-		(대명)레저&리조트학과	30	경영학사
	-		중등특수교육과	20	교육학사
	-		한국어교원학과	30	문학사
	-		국제경영학과	1	경영학사
	-		국제호텔경영학과	1	경영학사
	-		자연과학계열	해양심층수학과	30
	-	공학계열	건축공학과	35	공학사
	-		컴퓨터공학과	40	공학사
	-		정보보안학과	38	공학사
	-	예체능계열	체육학과	40	체육학사
	소계				570
평생교육대학	-	-	-	-	

○ 2017학년도 계약학과 정원

캠퍼스	대 학	계 열	학 과	학 년	입학정원 (단위:명)	학위종별
입학정원					153	
메디컬캠퍼스(원주문막)	평생교육대학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4(편입)	56	간호학사
			치위생관리학과	4(편입)	10	치위생학사
			작업치료학과	4(편입)	10	보건학사
글로벌캠퍼스(고성)	평생교육대학	자연과학계열	해양심층수 융복합학과	3(편입)	20	이학사
			공학계열	컴퓨터응용학과	1(신입)	10
		IT융복합학과		3(편입)	20	
		IT융복합학과	3(편입)	10	공학사	
메트로폴캠퍼스(경기도 양주)	평생교육대학	인문·사회계열	안보경영학과	3(편입)	10	경영학사
			공학계열	건축융복합학과	1(신입)	6
		3(편입)		1		

○ 2017학년도 교육편제 및 입학정원 < ① - 2 >

계열	대학, 학부	학과	입학정원 (단위:명)	학위종별
입학정원			1,785	
-	온사람교양교육대학	-	-	
인문·사회계열	관광산업학부	관광경영학과	33	경영학사
		호텔경영학과	33	경영학사
		외식사업경영학과	32	경영학사
		항공경영학과	32	경영학사
	-	행정학과	30	행정학사
	-	경찰학과	75	경찰학사
	-	경영학과	40	경영학사
	-	스포츠마케팅학과	65	스포츠경영학사
	간호보건대학	사회복지학과	70	사회복지학사
		보건관리학과	40	보건학사
	-	(대명)레저&리조트학과	30	경영학사
	-	국제경영학과	1	경영학사
	-	국제호텔경영학과	1	경영학사
	-	한국어교원학과	30	문학사
	유아교육학부	유아교육과	136	교육학사
-		중등특수교육과	20	교육학사
소계			668	
자연과학계열	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315	간호학사
		치위생학과	160	치위생학사
		작업치료학과	60	보건학사
		물리치료학과	70	보건학사
		안경광학과	30	보건학사
		응급구조학과	30	응급구조학사
		임상병리학과	60	임상병리학사
	관광산업학부	치기공학과	80	치기공학사
		호텔조리학과	30	이학사
	-	해양심층수학과	30	이학사
소계			865	
공학계열	-	토목공학과	33	공학사
	-	건축공학과	35	공학사
	-	건축디자인학과	33	공학사
	-	컴퓨터공학과	40	공학사
	-	정보보안학과	38	공학사
소계			179	
예체능계열	-	디자인학과	33	디자인학사
	-	체육학과	40	체육학사
	소계			73
-	평생교육대학	-	-	

입학정원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1,785	668	865	179	73

○ 2018학년도 캠퍼스별 교육편제 및 입학정원 < ① - 1 >

캠퍼스명	대학, 학부	계열	학 과	입학정원 (단위:명)	학위종별
입학정원(33개 학과)				1,785	
메트로폴캠퍼스 (경기도 양주)	유아교육학부	인문·사회계열	유아교육과	136	교육학사
	-		스포츠마케팅학과	65	스포츠경영학사
	-		행정학과	30	행정학사
	-		경찰학과	75	경찰학사
	-		경영학과	40	경영학사
	-		중등특수교육과	20	교육학사
	-		한국어교원학과(*)	30	문학사
	-		외식사업경영학과	32	경영학사
	관광산업학부	자연과학계열	호텔조리학과	30	이학사
	-	공학계열	토목공학과	33	공학사
	-		건축디자인학과	33	공학사
	-		건축공학과	35	공학사
	-		컴퓨터공학과	40	공학사
	-		정보보안학과	38	공학사
	-		예체능계열	디자인학과	33
	-	체육학과	40	체육학사	
	소계(16개 학과)				710
메디컬캠퍼스 (원주문막)	의료생명보건 대학	인문·사회계열	보건관리학과	50	보건학사
			사회복지학과	60	사회복지학사
		자연과학계열	치위생학과	160	치위생학사
			작업치료학과	60	보건학사
			물리치료학과	70	보건학사
			안경광학과	30	보건학사
			응급구조학과	30	응급구조학사
			임상병리학과	60	임상병리학사
	간호대학	치기공학과	80	치기공학사	
	간호학과	315	간호학사		
소계(10개 학과)				915	
글로벌캠퍼스 (고성)	온사람교양교육 대학		-	-	
	관광산업학부	인문·사회계열	관광경영학과	33	경영학사
			호텔경영학과	33	경영학사
			항공경영학과	32	경영학사
			(대명)레저&리조트학과	30	경영학사
	-	자연과학계열	해양심층수학과	30	이학사
	-	인문·사회계열	국제경영학과	1	경영학사
-	국제호텔경영학과		1	경영학사	
소계(7개 학과)				160	
평생교육대학		-	-	-	

* 학칙 제60조(한중대학교 특별편입생에 대한 특례)에 의거 한국어교원학과에 전통문화융합전공(문학사) 과정을 운영함

○ 융합전공과정

전공명칭	이수정원	학위종별
빅데이터분석융합전공	○ ○	통계학사
태권도산업융합전공	○ ○	경영학사
국방행정융합전공	○ ○	군사학사

○ 2018학년도 계약학과 정원

캠퍼스	대 학	계 열	학 과	학년	입학정원 (단위:명)	학위종별
입학정원(6개 학과)					102	
메디컬캠퍼스(원주문막)	평생교육대학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4(편입)	25	간호학사
글로벌캠퍼스(고성)	평생교육대학	자연과학계열	해양심층수융복합학과	3(편입)	20	이학사
		공학계열	컴퓨터응용학과	3(편입)	30	공학사
			IT융복합학과	3(편입)	10	공학사
메트로폴캠퍼스(경기도 양주)	평생교육대학	인문·사회계열	안보경영학과	3(편입)	10	경영학사
		공학계열	건축융복합학과	1(신입)	6	공학사
			3(편입)	1		

○ 2018학년도 교육편제 및 입학정원 < ① - 2 >

계열	대학, 학부	학과	입학정원 (단위:명)	학위종별
입학정원(33개 학과)			1,785	
-	온사랑교양교육대학	-	-	
인문·사회계열	관광산업학부	관광경영학과	33	경영학사
		호텔경영학과	33	경영학사
		외식사업경영학과	32	경영학사
		항공경영학과	32	경영학사
	-	행정학과	30	행정학사
	-	경찰학과	75	경찰학사
	-	경영학과	40	경영학사
	-	스포츠마케팅학과	65	스포츠경영학사
	의료생명보건대학	사회복지학과	60	사회복지학사
		보건관리학과	50	보건학사
	관광산업학부	(대명)레저&리조트학과	30	경영학사
	-	국제경영학과	1	경영학사
	-	국제호텔경영학과	1	경영학사
	-	한국어교원학과(*)	30	문학사
	유아교육학부	유아교육과	136	교육학사
	-	중등특수교육과	20	교육학사
소계(16개 학과)			668	
자연과학계열	간호대학	간호학과	315	간호학사
	의료생명보건대학	치위생학과	160	치위생학사
		작업치료학과	60	보건학사
		물리치료학과	70	보건학사
		안경광학과	30	보건학사
		응급구조학과	30	응급구조학사
		임상병리학과	60	임상병리학사
		치기공학과	80	치기공학사
	관광산업학부	호텔조리학과	30	이학사
		해양심층수학과	30	이학사
	소계(10개 학과)			865
공학계열	-	토목공학과	33	공학사
	-	건축공학과	35	공학사
	-	건축디자인학과	33	공학사
	-	컴퓨터공학과	40	공학사
	-	정보보안학과	38	공학사
소계(5개 학과)			179	
예체능계열	-	디자인학과	33	디자인학사
	-	체육학과	40	체육학사
	소계(2개 학과)			73
-	평생교육대학	-	-	
입학정원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1,785	668	865	179	73

* 학칙 제60조(한중대학교 특별편입생에 대한 특례)에 의거 한국어교원학과에 전통문화융합전공(문학사) 과정을 운영함

○ 2019학년도 캠퍼스별 교육편제 및 입학정원 < ① - 1 >

캠퍼스명	대학, 학부	계열	학 과	입학정원 (단위:명)	학위종별	
입학정원(32개 학과)				1,785		
메트로폴캠퍼스 (경기도 양주)	공공인재학부	인문·사회계열	행정학과	40	행정학사	
			경찰학과	40	경찰학사	
	-		경영학과	40	경영학사	
	관광산업학부		외식사업경영학과	40	경영학사	
	스포츠산업학부		스포츠마케팅학과	40	스포츠경영학사	
	유아교육학부		유아교육과	136	교육학사	
	-		중등특수교육과	20	교육학사	
	관광산업학부		자연과학계열	호텔조리학과	40	이학사
	-		공학계열	토목공학과	40	공학사
	-			건축디자인학과	40	공학사
	-			건축공학과	40	공학사
	-			컴퓨터공학과	70	공학사
	-			정보보안학과	40	공학사
	-			예체능계열	디자인학과	40
	스포츠산업학부		체육학과		44	체육학사
소계(15개 학과)				710		
메디컬캠퍼스 (원주문막)	의료생명보건대학	인문·사회계열	보건관리학과	50	보건학사	
	간호대학		사회복지학과	60	사회복지학사	
	의료생명보건대학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315	간호학사	
			치위생학과	160	치위생학사	
			작업치료학과	60	작업치료학사	
			물리치료학과	70	물리치료학사	
			안경광학과	30	보건학사	
			응급구조학과	30	응급구조학사	
			임상병리학과	60	임상병리학사	
			치기공학과	80	치기공학사	
소계(10개 학과)				915		
글로벌캠퍼스 (고성)	온사람교양교육대학	-	-	-		
	관광산업학부	인문·사회계열	관광경영학과	33	경영학사	
			호텔경영학과	33	경영학사	
			항공경영학과	32	경영학사	
			(대명)레저&리조트학과	30	경영학사	
			-	국제경영학과	1	경영학사
	-		국제호텔경영학과	1	경영학사	
관광산업학부	자연과학계열		해양심층수학과	30	이학사	
소계(7개 학과)				160		
-	평생교육대학	-	-	-		

○ 융합전공과정

전공명칭	이수정원	학위종별
빅데이터분석융합전공	○ ○	통계학사
태권도산업융합전공	○ ○	경영학사
국방행정융합전공	○ ○	군사학사

○ 2019학년도 교육편제 및 입학정원 < ① - 2 >

계열	대학, 학부	학과	입학정원 (단위:명)	학위종별
입학정원(32개 학과)			1,785	
-	온사랑교양교육대학	-	-	
인문·사회계열	공공인재학부	행정학과	40	행정학사
		경찰학과	40	경찰학사
	-	경영학과	40	경영학사
	관광산업학부	관광경영학과	33	경영학사
		호텔경영학과	33	경영학사
		외식사업경영학과	40	경영학사
		항공경영학과	32	경영학사
		(대명)레저&리조트학과	30	경영학사
	스포츠산업학부	스포츠마케팅학과	40	스포츠경영학사
	의료생명보건대학	사회복지학과	60	사회복지학사
		보건관리학과	50	보건학사
	-	국제경영학과	1	경영학사
	-	국제호텔경영학과	1	경영학사
	유아교육학부	유아교육과	136	교육학사
		-	중등특수교육과	20
소계(15개 학과)			596	
자연과학계열	간호대학	간호학과	315	간호학사
	의료생명보건대학	치위생학과	160	치위생학사
		작업치료학과	60	작업치료학사
		물리치료학과	70	물리치료학사
		안경광학과	30	보건학사
		응급구조학과	30	응급구조학사
		임상병리학과	60	임상병리학사
		치기공학과	80	치기공학사
	관광산업학부	호텔조리학과	40	이학사
		해양심층수학과	30	이학사
	소계(10개 학과)			875
공학계열	-	토목공학과	40	공학사
	-	건축공학과	40	공학사
	-	건축디자인학과	40	공학사
	-	컴퓨터공학과	70	공학사
	-	정보보안학과	40	공학사
	소계(5개 학과)			230
예체능계열	-	디자인학과	40	디자인학사
	스포츠산업학부	체육학과	44	체육학사
	소계(2개 학과)			84
-	평생교육대학	-	-	
입학정원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1,785	596	875	230	84

○ 2019학년도 계약학과 정원

캠퍼스	대 학	계 열	학 과	학 년	입학정원 (단위:명)	학위종별
입학정원(6개 학과)					97	
메디컬캠퍼스(원주문막)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4(편입)	25	간호학사
글로벌캠퍼스(고성)	자연과학계열		해양심층수응용복합학과	3(편입)	20	이학사
	공학계열		컴퓨터응용학과	3(편입)	20	공학사
			IT융복합학과	3(편입)	10	공학사
메트로폴캠퍼스(경기도 양주)	인문·사회계열		안보경영학과	3(편입)	15	경영학사
	공학계열		건축융복합학과	1(신입)	6	공학사
				3(편입)	1	

○ 2020학년도 캠퍼스별 교육편제 및 입학정원 < ① - 1 >

캠퍼스명	대학, 학부	계열	학 과	입학정원 (단위:명)	학위종별
입학정원(33개 학과)				1,785	
메트로폴캠퍼스 (경기도 양주)	-	인문·사회계열	행정학과	30	행정학사
	-		경찰학과	30	경찰학사
	-		경영학과	40	경영학사
	유아교육학부		유아교육과	136	교육학사
	관광산업학부	자연과학계열	외식사업학과	40	이학사
			호텔조리학과	40	이학사
	-	공학계열	토목공학과	40	공학사
	-		건축디자인학과	40	공학사
	-		건축공학과	40	공학사
	-		컴퓨터공학과	80	공학사
	-		소프트웨어학과	70	공학사
	-	예체능계열	디자인학과	40	디자인학사
	-		체육학과	44	체육학사
	-		스포츠마케팅학과	40	스포츠경영학사
소계(14개 학과)				710	
메디컬캠퍼스 (원주문막)	의료생명보건대학	인문·사회계열	보건관리학과	40	보건학사
			사회복지학과	40	사회복지학사
			웰니스경영학과	40	경영학사
	간호대학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355	간호학사
	의료생명보건대학		치위생학과	160	치위생학사
			작업치료학과	60	작업치료학사
			물리치료학과	70	물리치료학사
			안경광학과	30	보건학사
			응급구조학과	30	응급구조학사
			임상병리학과	60	임상병리학사
			치기공학과	80	치기공학사
소계(11개 학과)				965	
글로벌캠퍼스 (고성)	온사람교양교육대학	-	-	-	
	관광산업학부	인문·사회계열	관광경영학과	20	경영학사
			호텔경영학과	20	경영학사
			항공경영학과	20	경영학사
			(대명)레저&리조트학과	27	경영학사
			한국학과	1	문학사
	-	자연과학계열	국제경영학과	1	경영학사
	-		국제호텔경영학과	1	경영학사
관광산업학부	자연과학계열	해양심층수학과	20	이학사	
소계(8개 학과)				110	
-	평생교육대학	-	-	-	

○ 융합전공과정

전공명칭	이수정원	학위종별
빅데이터분석융합전공	○ ○	통계학사
태권도산업융합전공	○ ○	경영학사
국방행정융합전공	○ ○	군사학사

○ 2020학년도 교육편제 및 입학정원 < ① - 2 >

계열	대학, 학부	학과	입학정원 (단위:명)	학위종별
입학정원(32개 학과)			1,785	
-	온사람교양교육대학	-	-	
인문·사회계열	-	행정학과	30	행정학사
	-	경찰학과	30	경찰학사
	-	경영학과	40	경영학사
	관광산업학부	관광경영학과	20	경영학사
		호텔경영학과	20	경영학사
		항공경영학과	20	경영학사
		(대명)레저&리조트학과	27	경영학사
	의료생명보건대학	사회복지학과	40	사회복지학사
		보건관리학과	40	보건학사
		웰니스경영학과	40	경영학사
	-	국제경영학과	1	경영학사
	-	국제호텔경영학과	1	경영학사
	유아교육학부	유아교육과	136	교육학사
	-	한국학과	1	문학사
소계(14개 학과)			446	
자연과학계열	간호대학	간호학과	355	간호학사
	의료생명보건대학	치위생학과	160	치위생학사
		작업치료학과	60	작업치료학사
		물리치료학과	70	물리치료학사
		안경광학과	30	보건학사
		응급구조학과	30	응급구조학사
		임상병리학과	60	임상병리학사
		치기공학과	80	치기공학사
	관광산업학부	외식사업학과	40	이학사
		호텔조리학과	40	이학사
		해양심층수학과	20	이학사
	소계(11개 학과)			945
공학계열	-	토목공학과	40	공학사
	-	건축공학과	40	공학사
	-	건축디자인학과	40	공학사
	-	컴퓨터공학과	80	공학사
	-	소프트웨어학과	70	공학사
	소계(5개 학과)			270
예체능계열	-	디자인학과	40	디자인학사
	-	체육학과	44	체육학사
	-	스포츠마케팅학과	40	스포츠경영학사
	소계(3개 학과)			124
-	평생교육대학	-	-	

[별표2]

학교기업 현황

학교기업명	사업종목	학과
KDU Health-Care Training Center	교육서비스업(사회교육시설)	응급구조학과